

II. 내규 전문

대학원 인턴십 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일: 2026.05.2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생이 BK21사업, 정부 인력양성사업 등 산학(연)공동연구의 일환으로 국내외 연구소, 기업체 및 대학에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는 “인턴십(영문명: Internship) 교과목”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 ① 이 교과목의 명칭은 학점인정과 업무수행 기준에 따라 “인턴십(30)/인턴십(31)/인턴십(32)/인턴십(33)/인턴십(34)”로 구분하며, 통칭하여 “인턴십 교과목”(이하 본 교과목)이라 한다.
- ② 본 교과목의 담당교수(또는 학과주임교수)는 매학기 개강 전(1학기: 매년 1월, 2학기: 매년 7월)에 파견기관(연구소, 기업체 또는 대학 등)을 선정하고, 업체명, 수행 업무, 평가 기준 등이 포함된 인턴십 수행계획서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을 경유하여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국제공동연구로 해외파견을 나가는 경우, 출국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학원생 해외활동 신고에 관한 내규」 제4조에 따른 신고 절차를 함께 이행하여야 한다.
 1. 파견기관 초청장
 2. 연수국가 비자 사본 (단, 비자 면제 국가의 경우 제외)
 3. 항공권 사본
- ④ 본 교과목은 담당교수의 책임시간수, 강사료지급, 강의평가 대상 교과목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인턴십 수행 종료 후, 해당 학기 말에 성적 관련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을 경유하여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해야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제3조(수강신청)

- ① 본 교과목의 수강신청 자격은 비과세증명서를 통해 전일제 학생임이 확인된 학생에게만 부여된다. (제출서류: 4대보험증명서)
- ② 본 교과목은 한 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재학생(휴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인턴십(30)과 인턴십(34)는 재학 중 최대 1회에 한하여 수강 가능하고, 인턴십(31), 인턴십(32), 인턴십(33)은 각각 1학점으로 학기별로 한 번씩 수강할 수 있다.
- ③ 재학생으로서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본 교과목 신청 및 대학원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의 출석은 교과목의 종류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재학생 중 학점 취득 완료 또는 취득 예정 등의 사유로 학점 인정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본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 ⑤ 본 교과목의 수강 희망자는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턴십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고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단과대학 행정팀을 경유하여 공문으로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통해 인턴십 파견이 최종 허가된다.

⑥ 수강신청은 인턴십 신청서가 포함된 공문 제출로 대체하며, 제출 기한은 1학기는 2월 첫째 주, 2학기는 8월 첫째 주로 한다.

⑦ 인턴십(30)과 인턴십(34) 교과목 신청자는 인턴십 교과목 외에 연구필수 교과목, 공통선택 교과목(E-러닝)을 수강할 수 있다. (단, 스마트교과목 중 녹화강의로 운영되는 전공 교과목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추가로 수강할 수 있다.)

제4조(안전관리 및 사고처리)

① 파견학생의 기본 안전의무는 「대학원생 해외활동 신고에 관한 내규」 제6조에 따른다.

② 파견학생은 파견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지도교수 및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질병·부상 등 신체적 사고
2. 분실·도난·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3. 파견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연구활동 중단
4. 그 밖에 정상적인 파견 수행이 어려운 사유

③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대학원교학팀에 즉시 통보하고, 대학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파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파견학생 본인 및 파견기관에 있으며, 대학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접수 및 제3항에 따른 연락·지원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

⑤ 외교부가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이상을 발령한 지역에는 파견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파견 중 해당 경보가 발령된 경우 대학원장은 즉시 귀국을 명할 수 있다. 귀국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학원장은 파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성적)

① 본 교과목의 성적은 평가 결과표를 근거로 Pass/Fail로 산출하며,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학기별 평점, 장학평점, 전체평점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② 인턴십 수행평가표의 5개 평가항목 총합계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이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제6조(학점인정 기준)

① 본 교과목의 유형별 학점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턴십(30) 교과목: 3개월, 480시간 이상 수행 시 최대 3학점 인정
 2. 인턴십(34) 교과목: 4개월, 640시간 이상 수행 시 최대 4학점 인정
 3. 인턴십(31), 인턴십(32), 인턴십(33) 교과목: 각각 1개월 이상, 160시간 이상 수행 시 각 1학점 인정
- ② 인턴십 수행 기간에 따라 학기당 최대 16주(기본 학사운영기간)까지만 인정하며, 최대 4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③ 재학기간 중 인턴십은 졸업학점(교과학점)의 1/4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인정 가능하다.
1. 석사과정: 최대 5학점
 2. 박사과정: 최대 8학점
 3. 석박사통합과정: 최대 10학점

-
- ④ 해당 학기 종료 전까지 인턴십 수행기관으로부터 “인턴십 수행평가표”를 봉인된 상태로 수령하여 지도 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인턴십 성적기록표)을 거친 후, 단과대학 행정팀을 경유하여 성적입력 마감일 전까지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⑤ 대학원장이 제4조 제5항에 따라 귀국을 명한 경우, 파견 수행 기간 및 시간에 비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최소 수행 기간 및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⑥ 본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전공선택’으로 한다.

부 칙<제정 2025.04.30.>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2. (폐지규정) 「BK21 인턴십 운영에 관한 내규」와 「일반대학원 인턴십 운영에 관한 내규」는 본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3. (경과조치) ①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내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은 이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6.05.29.>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된 인턴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